



보도자료

다시,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6. 30.(목) 12:00 2022. 7. 1.(금) 초간	배포 일시	2022. 6. 30.(목) 12:00
담당 부서	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정책과	책임자	과 장 오태웅 (044-202-8830)
		담당자	사무관 김영수 (044-202-8831) 사무관 이용학 (044-202-8834)

7월부터 마트·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받는다.

- 유통배송기사, 택배 지·간선기사,
자동차·곡물 등 운송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확대 -

- 올해 7월부터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상품 등을 운송하는 배송기사와 택배사업의 물류 터미널 간에 물품을 운송하는 택배 지·간선 기사, 자동차 또는 곡물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가 새롭게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.
 - 현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택배기사, 퀵서비스기사 등 총 15개 직종 79만여 명의 노무제공자*가 산재보험법의 특례 제도를 통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.
 - * 보험설계사, 골프장캐디, 대출모집인, 건설기계조종사, 가전제품설치기사 등
- 지난 5월 하나의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 시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,
 - 기존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·재정의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3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.
- 이번에 적용되는 마트·편의점 배송기사 등 11만 8천여 명은 전속성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 위험 등을 감안하여 보호가

시급한 직종이라고 판단되어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다.

- 신규로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되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,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입직신고를 해야 한다.

- 이와 함께 보험급여와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종별 기준보수가 고시(6.30.)되면, 사업주는 산재보험료의 노무제공자 부담분(50%)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면 된다.

- 한편 이번에 신규로 적용되는 직종도 사업주 및 종사자 산재보험료 부담분의 50%를 1년간 경감받게 된다.

* 직종별 월 보험료(요율 1.90% 적용) : 유통배송기사 57,850원(종사자 28,920원, 경감 50% 14,460원) / 택배지간선 기사 59,850원(종사자 29,920원, 경감 50%, 14,960원) / 자동차·곡물 등 운송 화물차주 91,770원(종사자 45,880원, 경감 50% 22,940원)

-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“이번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적용 확대를 통해 고유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”라고 하면서,

- “이후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, 셔틀버스운전기사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다”라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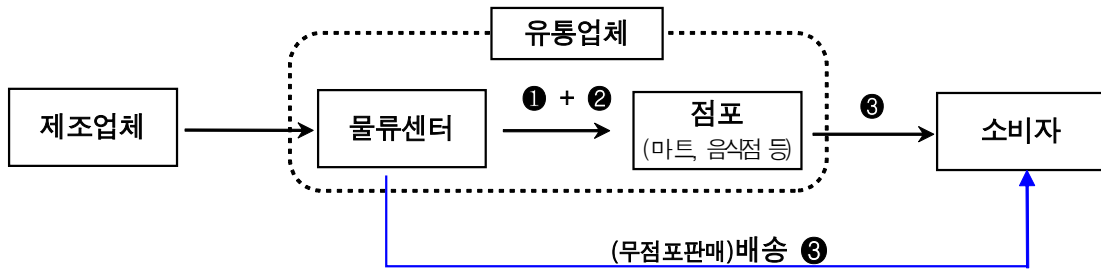
붙임 1

유통배송기사 등 적용 확대 대상

1

유통배송기사 (마트배송기사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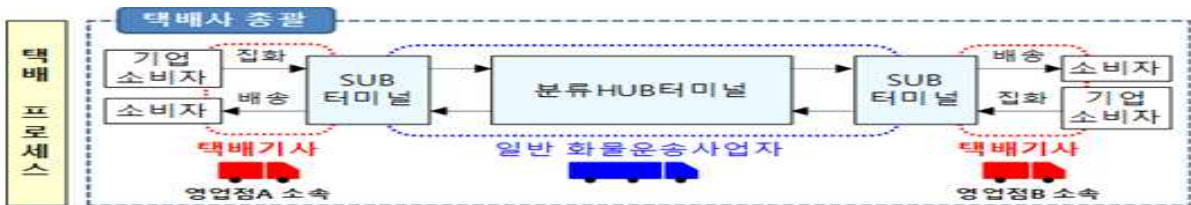
-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또는 음식점업(체인사업 및 기관 구내 식당업)에서 상품 또는 식자재를 운송하는 사람
 - 종사자 규모는 약 10만명으로 추산되며 아래 3가지 유형으로 구분
 - ① 물류센터에서 점포(대형마트, 편의점, 기업형 슈퍼마켓 등)로 일반상품 배송
 - ② 물류센터에서 음식점(체인점, 구내식당 등)으로 식자재 배송
 - ③ 물류센터 또는 점포에서 최종 고객에게 주문상품 배송



2

택배 지·간선 기사

- 택배사업에서 터미널 ⇄ 터미널 간 택배물품을 운송하는 지·간선 기사 (일반 화물운송 사업자)로 종사자 규모는 약 1.5만명



3

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

- 특정 품목 전용차량으로 ①자동차(카캐리어) 또는 ②곡물(밀가루·사료 등)을 운반하는 화물차주, 종사자 규모는 약 3천명

구분	자동차 (카캐리어)	곡물
차량		
화주	자동차를 제조·수출하거나 자동차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업체	밀가루, 사료 등 주로 곡물을 수입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제조공장에 납품하는 업체

□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

유통산업		정의	세분류	유통회사 예시
유점포 판매	대규모 점포	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서 상시 운영되며,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㎡ 이상	대형마트	홈플러스, 이마트, 롯데마트, 하나로마트 등
			전문점	하이마트, 전자랜드 등
			백화점	현대, 신세계, 롯데, 갤러리아, NC, 애경 등
			쇼핑센터 복합쇼핑몰	뉴코아아울렛, 롯데아울렛 등
	준 대규모 점포	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,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	슈퍼마켓	롯데슈퍼, 홈플러스 익스프레스, 이마트 에브리데이, GS리테일, 농심 메가마트, 뉴코아 김스클럽마트 등
			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	
	체인 사업	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직영하거나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·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	직영점형	(편의점) 이마트24, 세븐일레븐, GS25, CU, 바이더웨이, 미니스톱, StoryWay 등 (의류) 나이키, 해지스, 빈폴 등 *백화점·아울렛 입점업체 포함 (기타) 다이소, 화장품(올리브영 등)
			프랜차이즈형	
			조합형	
무점포판매	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	전자상거래 (온라인유통)	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소매형태로 대형 백화점, 대형 할인점 등도 동시 운영 (ex. 마켓컬리, SSG, 쿠팡 등)	
		TV 홈쇼핑	방송 매체를 통한 소매업태의 하나로 쇼 호스트의 상품 설명, 모델들의 시연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유통 채널	
		기타	방문판매 및 가정내 진열판매, 다단계판매, 전화권유판매,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	

□ 음식점업

- (체인사업) 제과(파리바게트, 푸레쥬르, 베스킨라빈스 등), 치킨(BBQ, BHC 등), 피자(피자헛, 도미노 등), 커피(스타벅스, 파스쿠찌 등), 햄버거(롯데리아, 맥도날드, 버거킹 등), 외식업(VIPS 등 패밀리 레스토랑)
- (단체급식사업) 삼성웰스토리, 아워홈, 현대그린푸드, CJ프레시웨이, 신세계푸드, 풀무원푸드앤컬처 등



보도자료

다시,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6. 30.(목) 12:00 2022. 7. 1.(금) 조간	배포 일시	2022. 6. 30.(목) 12:00
담당 부서	고용서비스정책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TF	책임자	팀 장 이도경 (044-202-7919)
		담당자	사무관 배혜영 (044-202-7909) 사무관 박효순 (044-202-7225)

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 적용 확대 시행

-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 사업자등록 없는 일부 고유번호증 보유자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
- 「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 연구회」 구성,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관련 세부 논의 시작

□ 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와 근로복지공단(이사장 강순희)은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*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.

* 정보통신(IT) 소프트웨어 기술자,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, 관광통역안내사, 골프장 캐디, 화물차주(유통배송기사, 택배 지·간선기사, 특정품목운송차주)

○ 정부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'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'21년 7월 노무제공자 12개 직종*, '22년 1월 플랫폼 기반 2개 직종**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별로 확대해왔다.

* 보험설계사, 학습지 방문강사, 교육교구 방문강사, 택배기사, 대출모집인, 신용카드 회원모집인, 방문판매원, 대여제품방문점검원,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, 방과후학교 강사, 건설기계조종사, 화물차주(수출입컨테이너, 시멘트, 철강재, 위험물질)

** 퀵서비스기사(배달라이더 포함), 운전기사

- 5월 말 현재 한 번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노무제공자는 누계 1,189,963명(중복제거시 957,059명)이고, 이 중 플랫폼종사자는 누계 335,962명(중복제거시 307,573명)으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 1년 만에 약 119만명(중복제거시 약 96만명)이 가입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,

* 상기 통계는 추출 시점에 따라 신고 취소 등으로 수치가 변동 가능한 잠정치임

- 이번에 5개 직종*이 추가되면서 더 많은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.

* 5개 직종의 총 규모는 약 34만명으로, 소득·연령요건에 따라 실제 피보험자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

○ 아울러, 그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은 폐업 결정 등 사업운영에 있어 자영업자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가입대상에서 불합리하게 제외되어왔다.

- 이에 7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만을 허용하는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*를 부여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운영주체로서 비자발적 폐업 가능성이 있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**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.

* 「소득세법」 제168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 과세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여 부여하는 납세번호

**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·가정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

<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주요 내용>

□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이번에 추가 적용되는 5개 직종을 포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19개 직종*이며,

○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연은 월 보수액**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.

* '21.7월 고용보험이 적용된 화물차주와 '22.7월부터 적용되는 화물차주는 노무제공 실태 등에 차이가 있어 별개 직종으로 산정

**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·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

□ 또한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,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일~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.

* 이직일 전 3개월간 30% 이상 소득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

○ 아울러,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,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, 출산전후급여를 90일(다태아의 경우 120일)간 받을 수 있다.

- 한편,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, 매월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.
 -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(1.6%)을 곱하여 산정하고,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.
 -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공제하여 사업주의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,
 -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%를 지원할 예정이다.
- * (대상)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

<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현장 홍보>

-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5개 직종의 고용보험 시행 초기,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보험사무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등 현장의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6개월간 「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 신고기간*」을 운영한다.
 - * 해당 기간 중 피보험자격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한 고용보험법상 관련 과태료 부과 면제
- 또한 사업주 대상으로 고용보험 시행 관련 맞춤형 교육 및 안내 등을 지속해서 실시하고, 온·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하여 종사자들과 일반 국민에게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릴 예정이다.
 - 이와 함께 7월1일부터 적용 대상이 된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관련 협회, 분야별 커뮤니티 등을 통한 대상별 목표화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.

<향후 계획>

- 앞으로는 직종별 확대 방식이 아닌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.
 - * 수많은 직종을 일일이 실태 파악을 통해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, 직종별 확대 방식 지속시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이 지연될 우려

-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임금근로자 및 소득과약이 가능한 노무제공자 대상으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, 이를 토대로 '24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'23년에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.
- 한편,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관련하여서는 '21년 9월부터 '22년 3월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자영업자 연구회를 운영했고,
 - 이를 발전시켜 6월 28일 전문가,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「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 연구회*」를 구성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세부 논의를 시작했다.
 - * 고용부(고용서비스정책관 좌장), 관계부처(기재부, 중기부, 국세청), 전문가로 구성
 - 연구회에서는 전문가 중심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세부 과제 및 쟁점을 구체화하여 연말까지 복수의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하고,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.
- 이정식 장관은 “이번 고용보험 확대 적용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를 통해 일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”라면서,
 - “확대된 고용보험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, 앞으로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종사자분이 보다 빠른 시일 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- 한편,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나 전화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,
 -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 세부 사항은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전화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.



'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추가 적용됩니다



* 기존 적용직종 : 보험설계사, 신용카드 회원모집인, 대출모집인, 학습지 방문강사, 교육교구 방문강사, 택배기사, 대여제품 방문점검원, 가전제품 배송·설치기사, 방문판매원, 화물차주(수출입컨테이너, 시멘트, 철강재, 위험물질), 건설기계조종사, 방과후학교 강사(초·중등), 퀵서비스기사, 대리운전기사

사업장가입 및 피보험자격신고

사업장 가입

*사업주 신고

① 사업장 성립신고

노무제공자 최초 사용일로부터 14일 이내
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

② 사업장 변경신고

상호, 사업주 등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
14일 이내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제출

③ 사업장 소멸신고

폐업, 사업종료된 경우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
보험관계 소멸신고서와 보수총액신고서 제출

피보험자격 신고

*사업주 신고

① 피보험자격 취득신고

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에 대해
노무제공개시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
취득신고서 제출 *단기노무제공자(계약기간
1개월미만)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제출

② 피보험자격 변경, 정정

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
피보험자 내용변경신고서 제출

③ 피보험자격 상실신고

계약종료 등으로 이직할 경우 종료일의
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
* 이직월까지 지급된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료
정산 및 납부

보험료 산정 및 부과

① 월보수액 통보

사업주가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을
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신고

② 보험료 산정, 부과, 고지

(보험료 산정)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 × 보험료율
보험료 부과(매월 15~18일) 및 고지(매월 22일경)

③ 보험료 납부

매월 월별보험료 납부(매월 10일까지)
*매월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보험료 원천공제

부과 과정(예시) 7월 노무제공자 월보수 발생 → 8월 31일까지 월보수 신고 (7월분)
→ 9.15~18일경 (7월분) 보험료 산정, 부과 → 9.22일경 보험료 고지 (10.10.납기)

문의는?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-0075

신고는? 공단 홈페이지(www.kcomwel.or.kr), 고용산재토탈서비스(total.kcomwel.or.kr)에서 작성·제출 가능



1 고용보험 적용

<노무제공자>

- ‘고용·산재토탈서비스’ 접속 및 사용 방식, 고용보험 신고 관련 문의, 사업장 성립, 피보험자격 취득, 고용보험료 산정 등 고용보험 가입에 관련된 사항은 관할 특고센터로 문의

서울 (서울, 강원도, 경기도 의정부시, 동두천시, 양주시, 포천시, 연천군, 남양주시, 구리시, 가평군)	주소	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(수송동, 연합뉴스빌딩) 11층			
	대표번호	02-6946-0500			
	팩스번호	1부	0502-223-3102	3부	0502-223-1204
2부		0502-223-1203	예술인 가입부	0502-223-3203	
경인 (인천광역시, 경기도 의정부시, 동두천시, 양주시, 포천시, 연천군, 남양주시, 구리시, 가평군 제외)	주소	인천시 부평구 길주로 635(삼산동, 엘림타워) 501호			
	대표번호	032-712-0500			
	팩스번호	1부	0502-451-1102	2부	0502-451-1103
부산 (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경상남도, 경상북도)	주소	부산 동구 중앙대로 276(초량동, 아모레퍼시픽) 10층			
	대표번호	051-790-0300			
	팩스번호	1부	0502-661-1102	2부	0502-661-1103
대전 (광주광역시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제주특별자치도, 대전광역시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세종특별자치시)	주소	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137(둔산동, KT&G) 7층			
	대표번호	042-718-0600			
	팩스번호	1부	0502-870-1102	2부	0502-870-1103

<자영업자>

- 고용보험 신고 관련 문의, 피보험자격 취득, 고용보험료 산정 등 고용보험 가입에 관련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로 문의
-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-0075

2 구직급여 · 출산전후급여 수급

- 구직급여 수급요건,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 등 고용보험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한 사항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문의
- 고용노동부 대표번호: 1350